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기정예산액	증감액
합	계	4,441,083,949	4,362,277,615	78,806,334
일	반 회 계	3,737,466,802	3,666,220,829	71,245,973
특	별 회 계	703,617,147	696,056,786	7,560,361
	기 타 특 별 회 계	373,706,656	366,146,295	7,560,361
	농어촌주택사업	11,325,667	11,325,667	0
	의 료 급 여 기 금	341,990,989	334,430,628	7,560,361
	동부권특별회계	20,390,000	20,390,000	0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29,910,491	329,910,491	0
	지 역 개 발 기 금	329,910,491	329,910,491	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,086,21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.